



의안번호	제 2013 - 3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2. 4. (제46차 회의)

의
결
안
건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1과 같이,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2와 같이,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확정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심의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이를 시행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조세범죄
- 공갈범죄
- 방화범죄

나. 양형기준의 내용

(1) 적용범위

- 적용 대상 개별 죄명
- 인적 적용범위
 -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

(2)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 기준표

- 유형의 정의
- 양형인자의 정의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공통원칙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다수범죄 처리기준

(3)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기준표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다. 양형기준의 적용시기

- 양형기준의 효력 발생 이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
- 다만, 양형기준의 구체적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필요

4. 별지

- 별지1 : 조세범죄 양형기준
- 별지2 : 공갈범죄 양형기준
- 별지3 : 방화범죄 양형기준

◆ 약어표 ◆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별지 1]

조세범죄 양형기준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상습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특가법상 조세포탈(특가법 제8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6월-10월	8월-1년2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 형 인 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 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 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 양 형 인 자	행위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0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u>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u>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 정 형
일반 조세포탈로서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일반 조세포탈로서 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세액 등의 30/10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단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습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의 1/2 가중

2. 특가법상 조세포탈

-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 정 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 정 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위 행위의 알선·중개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 정 형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조세포탈 / 특가법상 조세포탈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동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 조세포탈 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1. 조세포탈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u>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u>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u>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u> 거래 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2]

공갈범죄 양형기준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공갈(형법 제350조),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상습공갈(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공갈(폭처법 제2조 제2항), 누범공갈(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4항), 특경법상 공갈(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u>8월</u>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u>1년2월</u>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u>3년</u>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u>4년6월</u>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또는 내부비리 고발</u>	○동종 누범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u>○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u>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1유형 또는 2유형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1유형 또는 2유형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u>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또는 내부비리 고발</u>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계획적인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u>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u>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공갈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공갈	형법 제350조
공동공갈	폭처법 제2조 제2항
특경법상 공갈	특경법 제3조 제1항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상습·누범· 특수공갈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누범공갈	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공갈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유형 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상습특수공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공갈	폭처법 제3조 제4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고소, 고발 등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하지는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동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미합의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방화범죄 양형기준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형법 제164조 제2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5조),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6조 제1항), 타인 소유 일반물건방화(형법 제167조 제1항), 문화재 방화(문화재보호법 제94조), 채종립 등 방화(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행위자 /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4년	3년-8년	6년-12년
2	산림 방화	3년-6년	5년-9년	8년-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9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1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1항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5조

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1항

다.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제1유형(문화재 방화)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나. 제2유형(산림 방화)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	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나.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다.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거워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경미한 상해(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유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u>(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u>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